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9년 11월 28일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의안번호: 2019 - 85
- 제 안 자: 강서구청장
- 제안일자: 2019년 11월 5일
- 회부일자: 2019년 11월 14일
- 상정일자: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·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1. 2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물관리과장 이상훈)

□ 제안이유

「하수도법」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,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」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19. 9. 30. ~ 2019. 10. 20.) 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수석전문위원: 이광희)

가. 폐지취지

- 이 폐지 조례안은 「하수도법」, 「질서위반행위법」 등 상위 법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과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나. 종합의견

- 이 폐지조례안은 2007.9.27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에서 과태료 징수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「하수도법」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,

-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(2007.12.21.제정, 2008.6.22. 시행)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
- 이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상위 근거 법령이 2007년·2008년에 시행된 바, 상위 법 제개정사항 반영 조치가 상당히 늦었으므로 향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관련 법령

□ 하수도법

제80조(과태료) ① 삭제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
2.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·관리기준을 위반한 자
2.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2.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
3. 공공하수처리시설,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,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- 3의2.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4.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
5.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
6.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
7.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
8.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9.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10.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
11.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
12.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·관리한 자
13.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14.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
15.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16. 제45조제1항·제51조제1항·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
17.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
18.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

19.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0.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1.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2.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3.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24.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5.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·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
 26.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·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
 27.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
 28. 제69조제1항제1호·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1.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.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
 3.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4.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5.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6.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
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- ⑦ 삭제
 - ⑧ 삭제

□ 하수도법 시행령

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, 과태료 금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삭제

-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-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이하 이 조에서 "증가산금"이라 한다)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④ 삭제